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법조출입·정치부·사회부

발 신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참여연대(참여연대 담당 이지은 간사, 02-723-0666, 디정넷 회우 활동가 02-774-4551 민변  
디정위 최새얀 변호사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

제 목 [보도협조]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시작에 앞선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5.11.6. (총 8 쪽)

## 보도자료

###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서도 제출

1.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주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이는 2021년 SKT 가입자들이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청구한 것에 대해 1심, 2심 모두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2.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가명처리'와 '처리'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 "가명처리"의 개념은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는 점, △ 개인정보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 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가명처리'와 '처리'를 구분한 것은 '가명처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 두 개념이 별개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행위’ 그 자체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처리’에서 제시한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는 점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4. 열람권, 정정요구권, 삭제권을 비롯해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고, 필요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손에 일단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처리정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최소한의 통제장치입니다. 특히 가명정보 특례에 따라 내가 원치 않더라도 과학적 연구목적, 통계 등의 목적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가명처리된 가명정보를 마음껏 사고 팔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조차 없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권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5. 이에 민변 디지털정보위, 디지털정의네트워크(구 진보넷),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는 오늘(11/6) 판기환송심 재판부 앞에서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오히려 기본권을 무력화시킨 판결을 규탄하며 파기환송심에서 법률과 헌법에 충실한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제60민사부)에 원고들이 처리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가명처리를 위한 일련의 전체 과정 중 일부 단계(그림에서 3단계)로서의 ‘가명처리’(즉, 대법원이 처리정지권을 인정하지 않은 가명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6.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2호의 ‘처리’의 개념에 ‘가명처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동법 제37조 제1항의 ‘개인정보 처리’에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병기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하였습니다. 끝

▣ 불임1 : 기자회견문

▣ 불임2 : 참석자 주요 발언

## 기자회견문

#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 처리정지권 보장하라

대법원의 억지에 가까운 판결로 인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법과 상식,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되새기고자 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를 상대로 제기한 가명처리의 정지 요구 소송에 대해 1·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봉쇄하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 소송은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수집목적 외로 사용하고 제3자에 제공하면서도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거부할 권리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이다.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으로 기업이 가명처리만 하면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막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행사한 것일 따름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가명처리’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니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가 정의한 ‘처리’의 개념을 왜곡한 것이다.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수집, 생성, 연계 등과 함께 ‘이와 유사한 행위’가 포함되며 이는 당연히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도 포함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GDPR도 마찬가지로 ‘가명처리’를 특정한 방식의 개인정보 처리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명처리는 명백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이며,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권은 가명처리에도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가명처리를 별도로 분리하는 대법원의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1·2심 법원들은 이러한 개념을 분명히 인식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가명처리되기 전에 이를 중단시킬 권리, 즉 ‘처리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가명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한 것일 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까지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가 동의없는 과학적 목적 활용에 대응하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유일하고 실질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데이터산업 육성 담론에 기대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냈다. 대법원 판결문은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용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완전히 봉쇄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이 가명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우리는 대법원의 자의적이며 자본친화적인 법리 해석을 강력히 비판한다.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원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단지 가명처리의 정지가 아니라, 내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처리를 정지해달라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이러한 취지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가명처리 정지권이 법문상으로도 명확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산업은 결코 시민의 권리 위에 세워질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그 어떤 산업 논리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끝.

## 발언1.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가명처리 정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이 소송은 어떤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내가 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SK텔레콤에 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보가 SKT나, SKT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다른 기업에 의해 사람을 감시하거나 살상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와 결합되어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연구에 활용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고, 처리 방식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 등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그 최소한의 권리마저 부정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1년에 시작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나 ‘공익적 기록보존’ 같은 명목으로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고 활용하는데, 이용자에게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도 개인정보의 ‘처리’에 포함되며 정보주체는 그 처리를 중단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상식적이고 정당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대법원은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니라고 구분짓더니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용자의 명확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가명처리와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자기정보결정권이 산업논리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단지 한 개인의 패소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명처리는 명백히 개인정보의 처리이며, 정보주체는 이에 대해 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올 파기환송심은 헌법이 보장한 상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법원은 가명처리가 개인정보의 처리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시민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작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2. 장선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안녕하세요. 장선미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대법원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된 국가이고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이실 겁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구체적 사건에서 권리 구제를 하는 사법은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이 아니라 사법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경우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헌에 명백히 반해서 정보의 처리에 가명처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해석이라는 명목으로 문헌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권리들이 배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명시된 내용이 가명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명 처리가 그 안에 포함된다고 문헌에 반하여 해석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법을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산업 육성이나 데이터 활용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이유로 있는 법에 반하는 방식으로 법을 창출해내는 것은 사법의 권한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공개된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결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문헌에 명백히 배치되는 판결을 자의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1심과 2심 법원이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충실히 해석 했던 것을 대법원이 정책적 판단을 내세워서 월권하여서 파기환송한 것은 사법의 본질을 잊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2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때에 정당한 판단, 법의 문헌에 합치하는 판단, 진정한 사법을 재판에서 실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3.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AI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AI 강국을 내세우면서 AI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AI가 무엇입니까? AI는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즉 AI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바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에는 우리 자신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AI 산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송에서 AI를 비롯한 기업의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고객인 우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처리 정지를 요구했던 가명 처리가 일반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가명 처리를 구분하는 해석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설령 개인정보 처리와 가명 처리를 구분하는 이런 해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 처리 그 자체를 정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일반 처리이건 가명 처리이건 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정지해 달라는 정보주체의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합니다.

AI 시대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또 우리의 동의 없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돼서 처리되고 판매되고 제공되고 공유되지 않고 우리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SK텔레콤이라는 거대 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부당하게 이용한 것에 대하여 저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립니다. 저희는 거대 기업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부당하게 이용하는 관행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처리 정지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고등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혁명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고, AI 시대 위기에 처한 정보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권을 인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